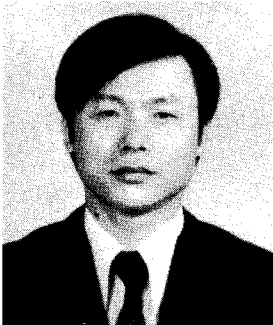


特許發明의 企業化 促進 方案



黃 義 昌
〈特許廳 調査課長〉

차 례

- I. 概要
- II. 特許發明의 企業化 現況
- III. 特許發明의 企業化 不進要因 分析
- IV. 特許發明의 企業化 促進方案
- V. 結論

〈이번號에 全載〉

I. 概要

우리나라는 60年代 이후 經濟成長의 核心要素인 産業技術의 開發과 尖端技術의 導入 등 技術先進化 政策과 産業財産權制度의 적극 활용으로 상당한 수준의 技術 保有국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先進 各國이 産業財産權을 自國의 産業保護와 通商振興의 武器로 사용하고 있는 傾向이 더욱 深化되고 있음을 감안해 불 때 政府次元의 과감한 發明獎勵와 特許發明의 企業化 施策이 시급히 要請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政府는 發明人口底邊擴大를 위한 發明獎勵事業과 特許權 取得 및 紛爭解決을 위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審査, 審判制度의 運營, 特許發明의 産業化 촉성시책 등을 강구, 시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本 課題에서는 特許라는 總體의 概念 중에서 特許發明의 企業化 부분을 重點의 으로 論하고, 特許發明 중에서도 個人發明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II. 特許發明의 企業化 現況

1. 登錄權利의 利用實態調査로 本 實施現況

特許廳이 1988.7~1989.3 사이에 特許發明의 産業發展에 대한 기여도와 장래의 權利變動狀況을 파악하여 産業財産權制度 運營의 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1988.1.1 現在 法定權利存續 期間內의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각각에 대하여 10%씩을 무작위 표本추출하여 이들 권리중 生存權利 總 4,024개, 內國人 권리(特許權 240, 實用新案權 1,082, 意匠權 2,702)를 대상 으로 登錄權利의 實施與否를 우편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特許權이 調査對象 240개 權利 中 49.1%, 實用新案權이 1,082개 권리 中 58.6%, 意匠權이 2,702개 권리 中 56.3%로서 평균 56.3% 정도가 企業形態로 實施되고 있었다.

참고로 特許廳이 1982년도에 登錄된 權利의 實施現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930개 권리를 무작위 표本추출하여 登錄權利의 實施率을 調査한 결과 特許權 55.3%, 實用新案權 67.1%, 意匠權 72.8%로 平均實施率이 67.5%로서, 이는

1989년 3월 조사당시의 平均實施率 56.3%보다 11.2%가 높은 利用率을 나타냈으며, 또한 1987年度 産業技術振興協會 主管으로 6,119개 권리를 對象으로 調査한 결과 特許權 34.7%, 實用新案權이 32.7%로 평균 67.4%의 實施率을 나타내어 1989년 3월 조사 당시의 平均利用率 56.3%보다 11.1% 포인트 정도의 높은 이용율을 나타내었고, 1984년도 日本發明協會가 조사한 日本의 登錄權利의 實施率은 평균 52.1%(特許權 50.7%, 實用新案權 53.4%)로서 우리나라의 1982년도의 平均實施權 67.5%보다 15.4% 포인트 정도가 낮고, 1989.3월 당시의 平均實施率 56.3%보다 4.2% 포인트 정도가 낮은 실정이다(表1).

2. 登錄料 納付狀況으로 본 實施現況

1989.12 현재 總登錄件數는 376,736개 권리(特許權 30,552, 實用新案權 44,042, 意匠權 107,127, 商標權 195,015)인바, 이 중 年次分登錄料 不納으로 인한 特許, 登錄權 소멸대상 건수가 198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總 43,232件(소멸 등록 : 15,690件)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연차별 등록료 납부 등의 철저한 事後管理를 하고 있는 存續權利는 사실상 實施

중에 있거나 實施 準備中 또는 實施豫定中의 權利로 보아 政府의 適切한 支援施策이 早速히 강구되어 企業化로 誘導·促進되어야 할 것이다.

Ⅲ. 特許發明의 企業化不進 要因分析

1. 內國人 特許發明의 未活用 要因

發明品은 企業의 生産活動으로 직접 연결되어 실시되고 消費生活의 向上에 公여하는 形態로 活用될 때 비로소 國家의 産業發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1988년도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가 實施한 「工業所有權 活用實態調査」에 의하면 發明品 가운데는 企業化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무려 전체의 65.3%에 해당될 만큼 많이 있다.

이 중 43.5%의 特許發明이 企業化資金確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성의 불확실 등 經濟性 把握의 어려움으로 特許發明이 活用되지 못하는 것이 15.2%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要因이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보여 內國人 發明이 未活用되고 있는 要因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적합한 實

(表1) 登錄權利의 實施率(%)

조사기관	실시권	평균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조사대상권리	조사시점
특허청		67.5	55.3	67.1	72.8	930개 권리	1982년
		56.3	49.1	58.6	56.3	4,024개 권리 -특허권 240 -실용신안권 1,082 -의장권 2,702	1989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3.7	34.7	32.7	-	6,119개 권리	1987년
일본발명협회		52.1	50.7	53.4	-	-	1984년

(表2) 年次分 登錄料 不納으로 인한 消滅對象 件數

(단위: 건)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비고
총등록건수	30,552	44,042	107,127	195,015	
소멸대상	11,988	11,625	19,619	-	'88년도 기준 총 43,232건
소멸등록	1,558(13%)	2,557(22%)	11,575(59%)		총 15,690건 평균 36%

※ 1989. 11. 기준

驗施設 및 生産施設·機資材確保 등의 어려움이 6.3%, 市場規模의 협소 5.6%, 發明自體의 技術의 低級 5.4%, 기존제품과의 價格競爭上의 취약 5.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發明技術의 高級化로 인한 주변기술이 充足되지 않음이 4.9%, 實施料 등 實施者와의 實施許諾 條件이 充足되지 않음이 2.5%, 테스트·임상·독성시험 비파괴·물성검사 등의 시설 등이 없어 信賴性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로 나타났다.

한편, 발명 미활용 요인의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企業化 資金確保의 어려움은 개인 발명의 경우에는 56.4%로 과반수 이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법인 발명에 있어서는 4.5%에 불과하는 큰 차이를 보여 발명 이용에 있어 기업화를 위한 資金不足은 대부분 個人發明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法人發明의 未活用要因은 시장성 불확실 등 經濟性 把握의 어려움이 29.7%, 市場規模의 협소 15.3%, 기존제품과 價格競爭 취약 13.5% 등과 같이 시장성과 관계되는 요인으로 인하여 미활용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個人發明의 경우에는 資金不足이고, 法人發明의 경우에는 發明品 자체의 經濟性의 不確信 등이 未活用の 主要 要因으로 分析되고 있다.

따라서 전후 特許發明의 企業化 促進을 위한 方案은 個人發明의 경우에는 資金支援의 擴大에, 그리고 法人發明의 경우에는 市場性 評價 機能 強化에 그 焦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表3). 한편 IPC 技術分類別 發明 未活用要因을 보면, 企業化 資金 確保에 어려움은 生活必需品(A), 처리조작 및 運送分野(B)가 타분야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化學 및 冶金(C), 고정구조물(E), 物理學(G), 電氣分野(H)는 相對的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市場性 不確實 등 經濟性 把握이 어려운 경우는 고정구조물(E)이 타분야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높은 比重을 보였고, 섬유 및 제지(D), 機械工學·조명·가열, 무기, 폭발분야(F) 등은 相對的인 낮은 比重을 나타냈다.

그리고 市場規模가 너무 협소하여 特許發明이 利用되지 않고 있는 發明은 化學 및 冶金(C), 物理學分野(G)가 타분야에 비하여 相對

〈表3〉 내국인 특허발명의 미활용요인

(단위: %)

구분	미활용요인	유효 응답 발명 수	시장성 불확실 등 경제성이 파악이 어려움	기업화 자금확보의 어려움	적합한 생산시설 및 기자재 확보의 어려움	실시료 등 실시자와의 실시허락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테스팅·임상·독성시험·비파괴·물성검사 등의 시설이 없어 신뢰성과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	시장규모가 너무 작음	기존제품과 가격이 경쟁이 안됨	발명자체의 기술적 가치 저위	최종특허를 얻기 위한 중간 특허임	기술고도성으로 주변기술이 충족되지 않음	기타
			15.2	43.5	6.3	2.5	2.0	5.6	5.2	5.4	2.6	4.9	3.8
계		446	15.2	43.5	6.3	2.5	2.0	5.6	5.2	5.4	2.6	4.9	3.8
권리	특허	289	13.1	41.2	6.9	2.1	2.4	6.9	4.2	5.2	6.6	6.9	4.5
	실용신안	157	19.1	47.8	5.1	3.2	1.3	3.2	7.0	5.7	3.8	1.3	2.5
권리자	개인	335	10.4	56.4	5.4	3.0	2.1	2.4	2.4	3.3	5.4	5.4	3.9
	법인	111	29.7	4.5	9.0	0.9	1.8	15.3	13.5	11.7	6.3	3.6	3.6
	기업	101	31.7	2.0	7.9	1.0	2.0	13.9	14.9	12.9	6.9	4.0	3.0
	연구기관	10	10.0	30.0	20.0	-	-	30.0	-	-	-	-	10.0

(자료) 공업소유권 활용실태조사 p. 143(産技協)

〈表4〉 IPC 기술분야별 내국인발명의 미활용요인

(단위: %)

미활용요인	구분	유효 응답 발명가	시장성 불확실 등 경제성이 어려움	기업화 자금확보의 어려움	적합한 생산시설 및 기자재 확보의 어려움	실시료 등 실시자와의 협의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테스팅·독상시험·비파괴·물성검사 등의시설이없어실패성과약을하지못했기때문	시장규모가 너무 작음	기존제품과 가격경쟁이 안됨	발명자체의 기술적 가치저위	최종특허를 얻기 위한 중간 특허임	기술고도성으로 주변기술이 충족되지 않음	기타
A:생활필수품		135	17.0	54.1	3.0	3.7	1.5	3.7	5.9	3.0	4.4	1.5	2.2
B:처리조작·운송		77	13.0	55.8	3.9	3.9	1.3	3.9	-	5.2	5.2	1.3	7.8
C:화학 및 야금		73	12.3	32.9	8.2	2.7	1.4	11.0	8.2	5.5	9.6	4.1	4.1
D:섬유 및 제지		11	9.1	45.5	9.1	-	9.1	9.1	-	9.1	-	9.1	-
E:고정구조물		26	23.1	26.9	3.8	7.7	-	7.7	11.5	3.8	7.7	7.7	-
F:기계공학·조명·가열·무기·폭파		61	9.8	39.3	9.8	-	6.6	4.9	1.6	8.2	3.3	13.1	3.3
G:물리학		24	20.8	25.0	8.3	-	-	12.5	16.7	-	4.2	4.2	8.3
H:전기		39	20.5	30.8	12.8	-	-	-	2.6	12.8	7.7	10.3	2.6

(자료) 공업소유권 활용실태조사 p. 145(産技協)

의므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제품과 價格競爭이 되지 않아 發明活用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경우는 고정구조물(E), 物理學分野(G) 등이 타분야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表4).

2. 外國人 特許發明의 未活用 要因

國內에 出願된 外國人 特許 중에서 實施를 目的으로 하여 出願된 比重은 53.1%에 해당한다.

이중 실제 실시되고 있는 것과 未實施 되고 있는 것의 比重은 調查自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正確히 把握되지 않았다.

1987년도 韓國産業權技術振興協會가 調查한 資料에 의하면 外國人 特許中에서 實施를 目的으로 出願된 外國人 特許發明의 未活用要因을 調查한 結果 技術販賣條件이 國內需要企業이 提示하는 條件과 맞지 않아서 未實施되고 있는 것이 80.1%로서 가장 주된 要因이 되고 있으며, 國內 生産技術 및 生産人力의 주변조건이 充足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53.9%를 나타내

었다.

이들 두 가지 要因이 特許發明이 實施되지 않는 주된 要因으로 分析되고있다.

그 다음으로는 國內既存製品과 價格競爭이 어렵기 때문이 29.8%, 特許發明의 기술이 自國 혹은 先進國에서도 아직 實施되지 않는 高度의 技術이기 때문이 25.5%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事實을 綜合하여 볼 때 技術販賣製造件에 관한 쌍방간의 合議導出이 매우 어렵다는 事實을 유추할 수 있으며, 國內技術水準의 抵制도 未活用이 主要要因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特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서는 국내 既存製品과의 價格競爭이 되지 않는 것, 즉, 技術의 比較優位를 確保하지 못한 特許發明도 29.8%나 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特許發明들은 大部分 방어 또는 防害 特許이거나 技術의 新規性 維持를 위해서 出願된 것으로 보여진다(表5).

한편 實施를 目的으로 出願된 外國人 特許發明의 未活用要因을 技術分野別로 살펴보면 技

〈表5〉 실시를 목적으로 출원된 외국인 특허발명의 미활용요인

(단위:명,%)

미활용요인	유효응답전문가 수	기술판매조건이 국내수요기업과 맞지않음	국내기존제품과 가격경쟁이 안됨	특허기술이 자 국 혹은 선진국 에서도 아직 실 시되지 않는 고 도의 기술임	국내생산기술· 생산인력 등 주 변조건이 불충 족	기 타
구분						
중 복 응 답	141	113(80.1)	42(29.8)	36(25.5)	76(53.9)	4(2.8)
계 1 순 위	141	84(59.6)	15(10.6)	17(12.1)	22(15.6)	3(2.1)
계 2 순 위	130	29(22.3)	27(20.8)	19(14.6)	54(41.5)	1(0.8)

〈자료〉 공업소유권 활용실태조사 p. 147(産技協)

〈表6〉 기술분야별 실시를 목적으로 출원된 외국인 특허발명의 미활용 요인

(단위:명,%)

미활용요인	유효응답전문가 수	기술판매조건이 국내수요기업과 맞지 않음	국내기존제품과 가격경쟁이 안됨	특허기술이 자 국 혹은 선진국 에서도 아직 실 시되지 않는 고 도의 기술임	국내생산기술· 생산인력 등 주 변조건이 불충 족	기 타
기술분야						
식·음료	9	8(88.9)	2(22.2)	1(11.1)	6(66.7)	-
섬유	7	6(85.7)	1(14.3)	2(28.6)	3(42.9)	1(14.3)
화학	43	31(72.1)	15(34.9)	11(25.6)	25(58.1)	1(2.3)
금속·비금속	7	6(85.7)	1(14.3)	3(42.9)	3(42.9)	1(14.3)
기계	28	23(82.1)	11(39.3)	6(21.4)	14(50.0)	-
전기·전자	30	25(83.3)	8(26.7)	9(30.0)	16(53.3)	-
정보산업	4	3(75.0)	1(25.0)	2(50.0)	2(50.0)	-
건설·용역	3	3(100.0)	1(33.3)	1(33.3)	1(33.3)	-
기타	10	8(80.0)	2(20.0)	1(10.0)	6(60.0)	1(10.0)

(주) 1순위, 2순위 구분 없이 중복응답처리하였음.

(자료) 공업소유권 활용실태조사 p. 148(産技協)

術販賣條件이 國內 수요 기업과 맞지않은 食, 飲料, 纖維, 建設, 用役分野 등이 相對的으로 比重이 높게 나타났고, 化學, 情報産業分野 등은 相對的으로 낮은 比重을 보였다.

또한 國內 既存 製品과 價格競爭이 안됨은 機械, 化學分野가 相對的으로 높게 나타났다.

特許發明의 技術이 自國 혹은 先進國에서도 아직 실시되지 않은 高度의 技術임은 金屬, 非金屬, 情報産業分野가 相對的으로 낮은 比重을 보였다(表6).

IV. 特許發明의 企業化 促進方案

최근들어 先進諸國들은 保護貿易強化와 産業財産權 侵害提訴 등으로 自國産業保護를 위한 특허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의 技術水

準이 어느 정도 競爭力을 갖추어 감에 따라 첨 단화되고 核心의인 技術의 國內移轉을 忌避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國內에서 開發하려는 技術과 관련한 特許들을 先進外國企業들이 權利先점과 결제 등의 目的으로 國內에 先出願하는 防禦, 防害의인 特許出願도 急增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國際的 産業環境變化에 적극 對應하기 위해서는 國內의 發明活動 活性化와 利用의 極大化를 통한 技術水準의 제고 및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절실히 要求된다.

이를 위하여 新技術開發을 위한 發明雰圍氣의 活性은 물론 特許發明의 企業化가 무엇보다도 艱요한 現안과제이므로 現행 各種 支援制度를 改善, 補完, 發展시키는 한편 새롭고도 획기

적인 支援方案을 강구하여 施行하여야 할 것이다.

1. 現行 支援制度의 改善 補完

現在 運營되고 있는 支援制度로서는 금융기관 및 벤처캐피탈會社의 新技術企業化 관련 資金支援, 世제상의 支援, 優秀發明 시작품제작지원, 特許發明品 우선구매제도, 우수발명 포상 등 各種 發明振興事業 및 企業化 支援事業 등이 있으나 그 實効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現行 制度를 다음과 같이 改善, 補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金融支援 制度

(1) 問題點

各級 金融機關 및 벤처캐피탈會社에서 施行하고 있는 新技術企業化 등에 대한 資金支援의 경우 대부분 融資와 관련된 물적담보가 요구되고 있어서 零細發明家와 技術創業人이 企業化 資金을 確保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따라 그 補完策으로서 技術信用保證制度가 1987年 이후 實施되고 있으나 新技術에 대한 評價의 어려움 때문에 별다른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改善方案

特許發明과 같은 新技術에 대한 評價業務를 담당할 新技術評價 專擔機構를 設置 運營하여 명실공히 技術信用保證制度의 수혜로 特許發明의 企業化를 促成한다.

2) 稅制上的 支援制度

(1) 問題點

現行 稅制上的 支援은 特許權과 實用新案權의 讓渡 및 貸與의 경우와 관련되어 發生되는 所得稅 및 法人稅는 면제 또는 減免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權利者 自身이 直接 實施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改善方案

現行 特許發明의 경우 權利者 自身の 直接 實施가 全體의 83.0%(産技協, 調查資料 41.4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권리자 자신의 직접실시의 경우에도 양도·

대여의 경우와 동일한 혜택이 준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特許發明品 優先購買制度

(1) 問題點

政府가 物品購買時 特許品, 實用新案登錄品·意匠登錄品을 製造하거나 購買하는 경우 隨意 契約에 의하여 物品을 購入할 수 있도록 關係 法令에 規定하고 있으나 本條項의 단서에 사양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다른 物品의 購入으로도 事業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경우에는 例外로 特許品 등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規定을 두고 있어 실제로 그 혜택이 배제되고 있어 活用度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2) 改善方案

特許品 등이 아니더라도 다른 物品의 購入으로 當該 事業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때에는 特許品 등의 優先購買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해 조항의 단서규정, 즉,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特許品 등의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 한다.

4) 優秀發明 試作品製作 支援制度

(1) 問題點

'82년 이후 '86년까지 5년간 優秀發明試作品 製作支援額은 總86件에 4.3億원으로 연평균 8.6千萬원, 그리고 건당 支援金額도 평균 500萬원에 불과한 극히 미약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소기의 實効를 거두지 못한 형편이다.

(2) 改善方案

實質的인 支援이 될 수 있도록 그 支援規模를 大幅 擴大, 支援하는 政策的인 결단이 촉구된다.

2. 새로운 次元의 企業化 方案

1) 特許發明의 企業化 促進委員會 設置運營

社團法人 形態의 特許發明 企業化 促進 專擔 機構를 設置하여 特許發明 權利者에게 創業을 알선하고 各種 特許情報를 蒐集, 分類, 整理하여 해당분야 企業體에 신속히 공급하여 企業으로 하여금 特許發明의 實施機會를 갖도록 함으로써 순수 國內 發明技術에 의한 健全한 企業 運營을 도모케 함은 물론 중복 研究, 開發 및

海外로부터의 不必要한 技術導入을 防止할 뿐만 아니라 國家的 次元에서도 重複投資를 막고 先進技術立國의 自立基盤을 構築해 나아가는데에도 매우 중요한 役割의 하나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2) 資金支援

特許發明의 利用率을 提高하기 위한 基盤조성을 위하여 一定 規模의 發明振興基金을 設置하여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特許發明의 創業 또는 利用企業에 支援하도록 한다.

3) 施設支援

(1) 賃貸工場의 供給

特許發明 權利者가 그 特許發明을 企業化 하고자 할 경우에는 現在 마산, 이리 輸出自由地域內 入住業體에 대한 工場賃貸와 같이 工業團地 조성시 일정비율의 賃貸工場 建築을 의무화하여 特許發明 權利者의 創業 등 영세기업들에게 임대로 工場을 供給하여 工場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2) 生産施設의 賃與

特許發明을 企業化하고자 하는 權利者에게는 소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기에 낮은

대여료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現行 生産施設 賃與制度를 보다 發展的으로 改善, 補完한다.

즉, 기존 業體나 中企業 以上の 企業體 대여료보다 낮은 料率로 適用받을 수 있도록 대여료 差等制를 運用하여 相對的으로 特許發明權과 같은 零細 創業者가 손쉽게 필요로 하는 製造施設 등을 確保할 수 있도록 한다.

(3) 公共實驗, 檢査施設 등의 無償 利用

國, 公立 등의 公共 研究施設 및 實驗施設 · 檢査施設 등을 無償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特許發明權者의 企業化를 積極 支援한다.

V. 結論

特許發明權者의 企業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기존의 資金 · 稅制 등의 各種 支援制度를 大幅 強化, 運營하는 한편 새로운 次元에서 特許發明에 對한 産業性評價 · 各種 生産 關聯施設의 賃貸使用, 호환성 시설, 즉, 實驗, 檢査施設 등의 共同 무상이용 등등을 통하여 特許發明이 國家産業 次元에서 利用될 수 있도록 政府의 實質的 支援施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特許廳 인사

▲관리국장 李相烈 ▲심사4국장 庚麟鳳
▲항고심판소 심판관 黃兌淸 ▲심사2국장 洪永杓 ▲정보자료국장 金宗熙 ▲국제특허연수원교수부장 申昌俊 ▲해외유학 金應來 ▲기획관리관실행정관리 담당관 金鎔大 ▲심사1국 외장심사 " 延元錫 ▲심사2국 운수기계 " 徐廷玉 ▲심사4국 전자 " 鄭用澈 ▲심사4국 토건 " 任昌顯 ▲국제특허연수원교수부 柳公一 ▲공보담당관 朴昌男 ▲기획관리관실기

획예산 " 高重元 ▲기획관리관실법무 " 金鳳熙 ▲정보자료국정비 기획과장 鄭양섭 ▲심사1국 상표2심사담당관 金明漢 ▲심사2국 일반기계 " 尹羽成 ▲심사3국 섬유 " 尹榮彩 ▲심사4국정보 " 廷吉雄 ▲심사4국 통신 " 高金永 ▲심판소심판관 李鎭元 ▲국제특허연수원 사무과장 黃善雄 ▲ 교수부 崔益夏 ▲ 지도과 사무관 李昭南